

당첨자 안내문 | 신혼부부

■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사전 서류제출 안내

구분	내용		비고
일정	정당 당첨자	2023년 3월 2일(목) ~ 3월 7일(화) 6일간, 10:00 ~ 17:00	사전예약제 운영
	예비 당첨자	2023년 3월 8일(수) ~ 3월 11일(토) 4일간, 10:00 ~ 17:00	사전예약제 미운영
장소	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견본주택 (부산 강서구 명지동 3597-1번지)		

※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■ 사전 서류제출 안내(구비서류)

구분	필수	해당자	해당 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 ※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02.10. 이후 발행분에 한함)
신혼부부	○		인감증명서	본인	-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※ 대리인 접수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※ 대리인 위임 불가
	○	○	주민등록표 등본	본인	-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		배우자, 세대구성원	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○	주민등록표 초본	본인	-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		배우자, 세대구성원	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혼인신고일 확인("상세"발급)
	○		출입국사실 증명서	본인	- 청약 자격요건 및 해외장기체류여부 확인 -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등 (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) - 2020.12.21.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일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 가능
	○		소득증빙 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)
	○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.)
	○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입양의 경우
	○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(임신중인 경우)
	○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	○	○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-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	○		전자수입인지(사본)	-	※ 인지세 납부 안내문(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홈페이지 참조)
대리인 제출 시	○		위임장	본인	- 견본주택 비치
	○		계약자 인감증명서	본인	-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※대리인 접수 불가
	○	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등 (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) - 2020.12.21.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
부적격 통보 받은 자	○		주택 소명자료	해당 주택	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
	○		사업주체 요구자료	해당 주택	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※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